

■ 법률 칼럼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requirement)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습니다.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 여론이 비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 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

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 서류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 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존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 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장례 칼럼

매장(埋葬)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 속에 묻는 것을 의미한다. 한문으로는 흙토변에 밟전과 흙토를 더하여 매자로 만들었다. 화장을 하고 남은 유골을 땅 속에 묻어도 매장이지만 일반적으로 시신을 관에 넣어 묘지에서 묻는 것을 매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형님 누나들과 시골에 성묘를 여러 번 갔다. 대구에서 경남 합천군 삼가면까지는 버스를 타고 4시간이나 산골을 가야만 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묘에 가서 절하고 예배 드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의 묘를 둘러보았다. 분명 할머니와 선조들의 시신은 나무관에 안장되어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묘를 간 그때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여서 관과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큰 뼈들만 흙 속에 남았으리라 생각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행하여 온 매장이고 알고 있는 시신 변화의 과정이다. 성경에도 사람들이 흙으로 빚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기록돼 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태평양을 건너와 이국 땅에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이 이민을 때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소양교육을 하루종일 받아야만 했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교육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죽는다는 사실은 교육내용에 없었다. 장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가운데 사망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면 백인 장의사가 인도하는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 이민 초기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매장을 원하셨다면 공원묘지에 땅을 사고 묻어야 한다. 그리고 망자나 가족이나 세월이 지나면 한국에서 매장을 한 것처럼 시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장례를 상담하면 한국인들은 거의 다 나무관을 선택한다. 같

은 이유이다. 하지만 미국의 매장은 한국과는 같지 않다.

LA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미국 어디나 똑같다) 로즈힐, 혹은 포리스트 룬 같은 큰 공원묘지가 있다. 묘지를 산다는 것은 그 자리에 묻힐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뿐이다. 그 땅 주인은 여전히 공원묘지이다. 집을 사면 땅도 내것이 되지만 묘지는 다르다. 그래서 묘지의 주인인 공원묘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묘지 사용 권리를 살 때 관리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몇 가지 중에 특이한 것이 겉관 사용이다. 겉관은 무엇인가?

시신을 모신 관을 바로 땅 속에 묻으면 오랜 세월 후 땅이 꺼지게 된다. 그러면 땅 주인 회사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묘지 관리를 위하여 콘크리트로 만든 겉관을 요구한다. 환송예식을 마치고 묘지에 가서 하관을 한다면 그 묘에는 유가족이 사야만 했던 겉관이 이미 심어져 있다. 결국 시신이 누워있는 관은 겉관 속에 넣는 것이다. 이 겉관의 목적은 꺼지는 땅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물건이어서 상품 중품 하품 등 여러 종류를 만든다. 시신을 이처럼 여러 겉관 속에 넣어 땅 속에 매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 전통적으로 행하였던 방법과 다르기에 진행과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국식의 매장이다.

유대인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왔고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흙에서 웃기며 흙으로 돌아간다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는지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한다.



이효섭 장의사, 시신방부사
(FDR4701, EMB9702)
(714) 951-2520, (714) 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